#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1 발의연월일: 2024. 1. 6.

발 의 자:조정훈·최수진·정성국

이인선 · 김용태 · 김대식

김미애 · 김민전 · 서명옥

최형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 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며,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에 포함된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복수의 학교법인이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하여 공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실시 장소, 감독관 파견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①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⑭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령을 위

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은 그 임용권자에게 5년간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원의 임용) ① ~ ⑩ (생 략)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에는 발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원의 임용) ① ~ ⑩ (현행과 같음)

①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며,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할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게 공개전형에 포함된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 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 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면 복수의 학교법인이 함 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하여 공 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에 게 공개전형 실시 장소, 감독관 <신 설>

<신 설>

파견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시·도 교육감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①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사 람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이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은 그 임용권자에게 5년간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